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785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6
다. 관계 기관 의견	10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11
가. 개정안의 내용	11
나. 검토의견	13
다. 관계 기관 의견	19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78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2.
- (3) 회 부 일 : 2024. 11. 25.

나.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

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 2)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
- 3)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 4)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2028년까지 매년 0.5%p씩 인하될 예정인 명목소득대체율(2024년 현재 42%)은 2025년부터 45%가 되도록 인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1천분의 1천350-----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	③ ----- ----- -----

현행	개정안
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90</u>으로 한다. ⑤ (생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u>2027년까지</u>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7. (생략) 18. 2025년은 <u>1천분의 1천245</u> 19. 2026년은 <u>1천분의 1천230</u> 20. 2027년은 <u>1천분의 1천215</u>	-----<u>1천분의 65</u>-----. ④ ----- ----- ----- -----<u>1천분의 130</u>-----.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u>2024년까지</u>----- ----- ----- ----- ----- -----. 1.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

현 행	개 정 안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만분의 450 2. 2026년은 1만분의 475 3. 2027년은 1만분의 500 4. 2028년은 1만분의 525 5. 2029년은 1만분의 550 6. 2030년은 1만분의 575 7. 2031년은 1만분의 600 8.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천분의 90 2. 2026년은 1천분의 95 3. 2027년은 1천분의 100 4. 2028년은 1천분의 105 5. 2029년은 1천분의 110 6. 2030년은 1천분의 115 7. 2031년은 1천분의 120 8. 2032년은 1천분의 125

나. 검토의견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¹⁾ 대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임.
- **명목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생애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같은 가입자(평균소득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때 수급하게 되는 기본연금액이 그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24년 현재 42%이나 향후 4년간 매년 0.5%p씩 하향 조정되어 2028년부터 40%로 적용될 예정임.²⁾
- 한편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41년경 적자 전환 후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측면이 있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1)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후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2024년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65만 2천원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비율은 약 67.4%임.

< 노령연금 수급액 별 수급권자 현황 >

(단위: 명, %)

계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742,708	584,564	2,095,585	1,191,117	668,799	389,632	368,239	223,174	178,533	43,065
(100)	(10.2)	(36.5)	(20.7)	(11.6)	(6.8)	(6.4)	(4.0)	(3.1)	(0.7)

주: 2024년 7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개정안은 2024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2024년 현재 42%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려는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점진적 인하 계획을 중단하고, 이를 일시에 인상하여 2025년부터 45%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각각 2048년과 2065년으로 전망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포함된 기금투자수익률 연평균 5.5% 달성을 전제로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각각 2053년과

2070년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은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 데,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한 급여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998년)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70%에서 60%로 하향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제1항),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 계산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제2항)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³⁾

- (2007년)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60%에서 50%로 일시 하향한 후 20년간 매년 0.5%p씩 인하하여 40%가 되도록 조정한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제1항),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제2항)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⁴⁾

□ 참고로 한정애의원(의안번호 제1250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4830호),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

3)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233호), 박수영의원(의안번호 제5437호) 및 전진숙의원(의안번호 제6006호)이 각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22대 국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발의 현황 >

구분	보험료율	명목소득대체율
한정애의원안 (제1250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45% (일시 인상)
주호영의원안 (제4625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현행 유지
김선민의원안 (제4830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50% (매년 0.5%p씩 16년간 인상)
김남희의원안 (제5233호)	13% (매년 0.3%p씩 13년간 인상)	50% (일시 인상)
박수영의원안 (제5437호)	13% (출생연도별 인상속도 차등화)	현행 유지
이수진의원안 (제5785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45% (일시 인상)
전진숙의원안 (제6006호)	13% (매년 0.3%p씩 13년간 인상)	50% (매년 0.5%p씩 16년간 인상)

주: 2024년 12월 10일 현재

□ 아울러 법제적 측면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인하하는 기존의 계획을 중단하려면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외에도 같은 법 부칙 제34조제3항⁵⁾의 “2027년까지”를 “2024년까지”로 함께 개정함으로써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5)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2008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한편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되 연령대별로 인상속도를 차등화⁶⁾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2024년 수준(42%)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준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명목소득대체율을 45%까지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6) 정부는 20대는 16년간, 30대는 12년간, 40대는 8년간, 50대는 4년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납부 중지 후 재개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일원화하면서 지원기간의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안 제100조의4 제1항 본문),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지하였다가 재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13분의 4를 지원하도록 하며(안 제100조의4제2항 본문),

재산 및 종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 ----- -----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3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다만, 제1호 및 제3

현행	개정안
<u>설></u> 1. · 2.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호의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3분의 4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본문에 따른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지원 방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각각 제10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

현 행	개 정 안
	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5 2. 2027년은 1천분의 10 3. 2028년은 1천분의 15 4. 2029년은 1천분의 20 5. 2030년은 1천분의 25 6. 2031년은 1천분의 30 7. 2032년은 1천분의 35

나. 검토의견

□ 2020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였음.

- (지원대상)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지하였다가 재개(단, 실업크레딧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고,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인 자
- (지원수준) 지원대상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을 초과하면 매월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 연금보험료 지원

□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장가입자나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및 영세사업장(사업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려면 ‘납부재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고,

지원기간도 사업장가입자는 최대 36개월까지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보다 요건·기간 등에 있어 불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

구분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가입자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12. 7월	'16. 8월	'95. 7월	'22. 7월
근거	법 제100조의3	법 제19조의2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법 제100조의4
도입 목적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구직급여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약 16.5만 원/월)	보험료의 75% (최대 47,250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재산· 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 사업·근로소득 제외	(재산) 12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12개월	제한 없음 (다만, '31.12.31까지 지원, 일몰제)	최대 12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현행 vs. 개정안 >

구 분		납부 재개					
		해 당			미해당		
재 산·소득 요건	충 족	구 분	지원수준	지원기간	구 분	지원수준	지원기간
		현 행	연금보험료의 일부	최대 12개월	현 행	-	
		개정안 (강행규정)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36개월	개정안 (강행규정)	연금보험료의 13분의 4	상한 없음
		※ 안 제100조의4제1항 본문			※ 안 제100조의4제2항 본문		
	미충족	구 분	지원수준	지원기간	구 분	지원수준	지원기간
		현 행	-		현 행	-	
		개정안 (재량규정)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안 (재량규정)	대통령령에 위임	
		※ 안 제100조의4제1항 단서			※ 안 제100조의4제2항 단서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인상된 4%p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국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조치로서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안 제100조의4제2항 본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13분의 4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부

칙 제3조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모두 국가가 지원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 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9%로 유지되고,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4%p)만큼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보험료율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기간을 확대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형평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일치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장가입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장가입자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을 초과하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음.⁷⁾

7)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⑥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 (지역가입자)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지역가입자의 사업·근로소득이 4,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⁸⁾

□ 한편 법적 측면에서는, 안 부칙 제3조의 “기본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에 정의되거나 사용된 바 없는 개념으로, 지역가입자별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 참고로,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도 ‘납부재개’ 요건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을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

8)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대상 재산·소득기준) 영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9)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편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선민 의원(의안번호 제379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및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5233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연금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2022년 7월 도입되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으며,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현행 지원제도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¹⁰⁾ 이를 통하여 제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10)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